『경희대학교(서울) 창업보육센터』 2025년 상반기(2차) 입주기업 모집공고



2025. 4.



2025년 제2차 경희대학교(서울)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

경희대학교에서는 기술·지식집약형 중소·벤처기업을 목표로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벤처 마인드를 갖춘 창업 초기 사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 역량 있는 (예비)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게시일: 2025.04.09.

1. 모집개요

가. 센터소재지

- 홍릉창업센터 (홍릉바이오의료창업센터/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11)

나. 모집 보육실

| 보육실 명 | 호실 | 계약 평수 (공용면적 포함) | 보육실 수 | 모집 보육실 수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홍릉창업센터 | 개별오피스 | 10평(22.8 m²) | _ | 2 |
| | 공유오피스 | 2.5평(5.7 m²) | _ | 2 |





다. 공간 세부사항: startup.khu.ac.kr (홈페이지)/ 홍릉센터공간VR (링크)

- * 공유오피스의 경우 비상주 형태의 보육 공간으로, 상주 공간으로 활용 불가
- ※ 홍릉창업센터 내 입주기업 주차 불가

2. 입주모집 일정

| 신청접수 | 1차 서류심사 | 2차 서류평가 | 선정 발표 | 센터 입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| 사업계획서. 제출서류 자체 서류 심사 | 1차 선정기업 심사위원 서류 평가 | 최종 선정기업 통보 | 입주계약서 작성 및 센터입주 |
| 2025.04.09.(수) ~ 2025.04.15.(화) | 2025.04.16.(수) | 2025.04.17.(목) ~ 2025.04.22.(화) | 2025.04.23.(수) | 5월 1일자 입주 |

가. 심사방식 : 서면심사(1차) 및 서면평가 (2차/심사위원 위촉)

나. 입 주 일 : 2025년 5월 1일

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

3. 모집대상

- 가.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6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(접수 마감일 기준)
 - 1) 사업개시일 :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,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
 - 2) 입주 조건 : 본점(사업자등록증)을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하여야 함
 - 3) 입주 제외 대상 업종 및 승인 제외 대상은 [별표1] 참고

나. 우대사항

- 1)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자회사
- 2) 본교 학생창업 또는 교수 창업자 (연구소기업)
- 3)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
- 4) <u>바이오, IT, 스마트관광 분야 기업</u>
- 5) 장애인 기업(장애인이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)
- 6) 군 제대 기업(국가보훈처-제대군인 지원센터 로부터 보육센터 입주 추천을 받은 경우)
- 7) 사회적기업 등 소셜벤처

4. 입주기간 및 비용 안내

가. 입주기간 및 성공부담금

| 구분 | 내용 | 비고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<u>입</u> 주기간 | 1년 | 1년 단위 연장 가능(연장심사 必) | | |
|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| 입주기업의 자본금의 3%에 해당하는 금액 | | | |
| 성공부담금 *입주기간 3년 경과 시 해당 | - 자본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의 3%에 해당하는 금액 | | | |
| ※합구시한 3한 경곽 시 예정 | - 자본금이 5천만원을 미달하는 🤊 | 경우 5천만원의 3%에 해당하는 금액 | | |

나. 보육실 현황 및 입주비용표

| 건물명 | 호실 | 보증금 | 임대료 | 관리비 | 전기사용료 냉난방기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|
| (구)이과대학(동관) | 전 호실 | | 평당 40,000 | 평당 10,000 | | | |
| 홍릉바이오의료센터 | 개별보육실 전 호실 | 월 임대료 | 평당 50,000 | 호실당 50,000 | 실비정산 | | |
| | 공유 오피스 | 10개월 해당 금액 | | 호실당 30,000 | | | |
| 조 그 참어 세티 | 지상 전 호실 | | 평당 70,000 | | | | |
| 종로창업센터 (사회교육연구소) | 지하 101호 | | 평당 50,000 | 평당 10,000 | | | |
| (小科亚哥包子至) | 기타 지하 호실 | | 평당 30,000 | | | | |
| 기타(감면) | ① 감면 대상: 대표가 본교 재직 전임교원, 정규직원 및 재학중인 대학원생, 학생 (휴학생의 경우 감면 대상 제외) ② 감면 내용: 최초 6개월 무상, 추가 6개월 50% 감면 시행(임대료만 해당) | | | | | | |

5. 입주업체 지원

- 가.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관련 연구소기업화 및 첨단기술기업화 연계 지원
 - 세부사항 홈페이지 링크 (클릭)
- 나.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(시제품 제작, 지식재산권 취득, 특허, 마케팅, BI/홈페이지 제작, 각종 인허가{벤처, ISO인증 등}) 지원(입주기업 중 선별)
- 다. 창업 관련 정보제공 및 전문 교육 등의 지원
- 라. 본교 보유 기술 이전 및 경희대 내 우수한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
- 마. 입주기업간 교류 협력 및 대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과의 대외 네트워킹 행사 지원
- 바. (화상)회의실 무료 이용
- 사.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스튜디오 (공간, 조명, 편집실 등)예약 사용 지원
- 아. 인터넷 전용선 무료 이용
- 자. 경희대학교 캠퍼스(서울) 주차권 구입시 할인 제공
- ※ 상기 지원 내용 중 일부 프로그램은 평가 결과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함

6. 제출 서류

- 가.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나.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(해당 업체)
- 다. 대표자 주민등록등본, 개인 인감증명 각 1부(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)
- 라.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 1부 (개인기업도 해당)
- 마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(신청일 기준)
- 바. 벤처기업 확인증, 신기술보유 등 각종 인증서류 (해당 업체)
- 사. 기타 증빙서류(각종 기술자격증 사본, 공업소유권 사본 등)
 -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제반자료(해당 업체)
- 아. 대표자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재학생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(해당 업체)
- 자. 주주명부 사본 1부(법인사업자에 한함)
- 차.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(소정양식)

7. 신청서 접수방법

- 가. 이메일 접수: khsd2825@khu.ac.kr
- 나. 문 의: 경희창업보육센터 행정실 02) 6212-9330
- 다. 참고사항: 세부정보 및 입주지원 참고사이트-창업지원단 홈페이지(startup.khu.ac.kr)

8. 유의사항

- 가. 창업보육실 사전 방문하여 보육 공간 확인
- 나. 실험장비 등 운반 가능 여부 확인
- 다. 대학교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용시설이므로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불가
- 라. 평가 결과.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이 없을 경우, 모집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할 수 있음 (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)
- 마. 입주대상자의 승인 취소로 인한 차순위자 선발 가능
- 바. 입주 후 2주 이내에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경희대학교 해당 보육실로 변경하여 제출
- 사. 제출자는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수신, 미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- 아.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(정의) 규정 적용-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
- 자.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및 승인제외대상은 [별표1] 참고

[별표 1]

1.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[시행 2024.8.28.] [대통령령 제34860호, 2024. 8. 27., 일부개정] 제4조 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<개정 2024. 8. 27.>

- 1. 일반유흥주점업
- 2. 무도유흥주점업
- 3. 카지노 운영업
- 4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- 5.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2. 승인 제외 대상

- 가.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
- 나. 국세, 지방세 체납자
- 다. 폐수. 소음.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
- 라. 기타 단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. 끝.